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·구급 체계 구축에
관한 조례안
(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조·구급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78호
- 나. 제출자 : 고성미 의원, 이인식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최근 전기차 화재, 온열질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및 재해 발생 급증으로 긴급하게 구조·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, 구조·구급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지원사업(안 제7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과 홍보(안 제8조 및 제9조)

4. 관계법령

-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구조·구급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,
 - 안 제4조에서는 구조·구급활동의 협조 및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사 신고 의무 등에 대하여,
 -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,
 -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,
 - 안 제8조에서는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,
 - 안 제9조에서는 구조·구급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2022. 1월에 개소한 금천소방서의 119 출동 현황(출처 : 서울시 통계)을 살펴보면 2022년 한 해에 총 13,432번 출동하여 6,999명을 이송하였음(1일 평균 36회 출동, 19명 이송)

출동건수	이송건수	이송인원			구급환자 유형별		
		소계	남	여	질환	교통사고	사고부상
13,432	6,993	6,999	3,514	3,485	5,002	471	1,526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구조·구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구조·구급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제정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.
-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4. 7. 3.] [법률 제19871호, 2024. 1. 2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·구급(이하 “구조·구급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구조·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·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·구급장비의 구비, 그 밖에 구조·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·119구급대원·119항공대원(이하 “구조·구급대원”이라 한다)이 위급상황에서 구조·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0. 10. 20.>

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, 119구조대·119구급대·119항공대(이하 “구조·구급대”라 한다)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